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국가유공자의 자긍심을 제고하고 국민의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하여,
국가유공자 명패를 부착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1. 00. 00. ~ 00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국가유공자 등의 명패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

국가유공자 등의 명패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2호나목 중 “같은 법 제4조제1항제4호 · 제9호 · 제12호 · 제13호 · 제17호 · 제18호”를 “같은 법 제4조제1항제4호 · 제6호부터 제9호까지 · 제12호 · 제13호 · 제17호 · 제18호”로 하고,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. 같은 법 제4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부착 대상)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의 집에 국가유공자 등의 명패(이하 “명패”라 한다) 를 부착한다.	제2조(부착 대상) ----- ----- ----- -----.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다 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. (생략)	2. ----- ----- ----- 가. (현행과 같음)
나. <u>같은 법 제4조제1항제4호</u> <u>· 제9호 · 제12호 · 제13호</u> <u>· 제17호 · 제18호</u> 에 해당 하는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	나. <u>같은 법 제4조제1항제4호</u> <u>· 제6호부터 제9호까지 ·</u> <u>제12호 · 제13호 · 제17호</u> <u>· 제18호</u> ----- ----- -----
다. <u>같은 법 제4조제1항제6호</u> <u>부터 제8호까지 · 제10호</u> 에 <u>해당하는 국가유공자</u>	다. <u>같은 법 제4조제1항제10</u> <u>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</u>
라. (생략)	라. (현행과 같음)
3. · 4. (생략)	3. · 4. (현행과 같음)